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35호 2020. 5. 28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「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안 입법예고
(예천군 공고 제2020-807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「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5월 28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~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4조)

다.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~6조)

라.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)

마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(안 제8조)

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 (안 제9조)

3. 제정 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
 - 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신설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(제정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주민복지실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 사항 등
- 다. 보내실 곳
 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
 - 전화 : 054-650-6207 팩스 054-650-6360
 - 전자우편 : ycgm3698@korea.kr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지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

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은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「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예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 2. 모집·배치팀
 3. 활동관리팀
 4. 활동지원팀
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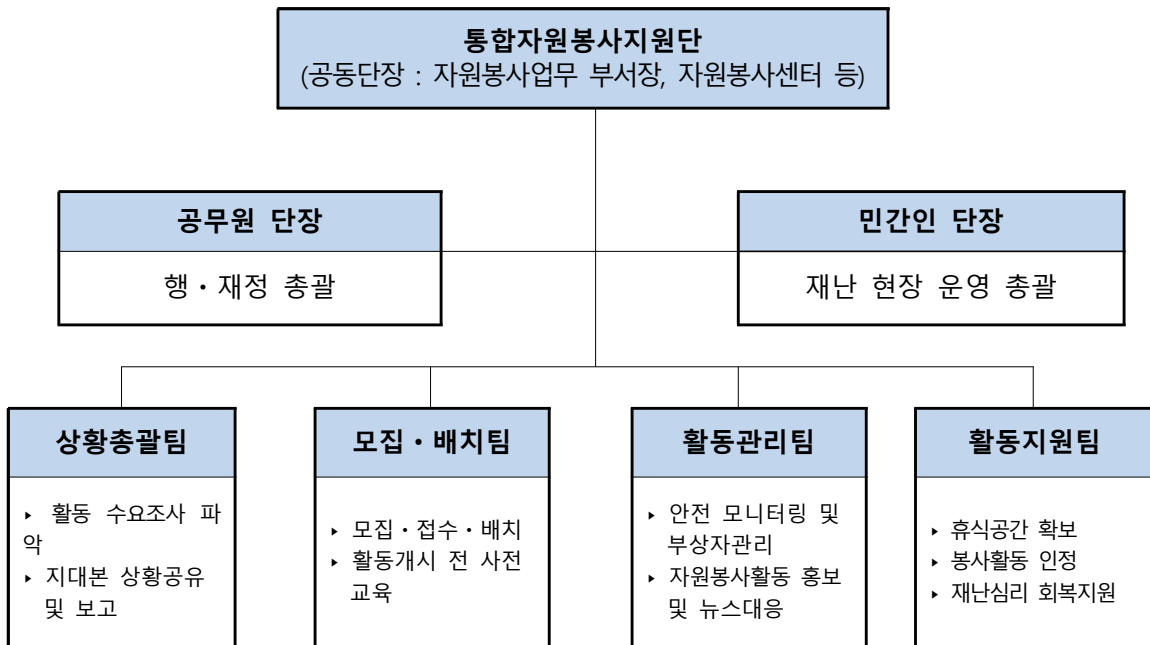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2]

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		
팀명	직위	담당 사무
단장	공무원 (예천군 자원봉사 업무부서장)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	민간인 (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)	
상황총괄팀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	예천군 자원봉사 업무부서 팀장	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▶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모집·배치팀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
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지원
활동관리팀	예천군 자원봉사 업무부서 팀원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
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
활동지원팀	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: 2019. 12. 3.]